#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161 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김용민・이기헌・문정복

임미애 • 민형배 • 이건태

주철현 • 황운하 • 문진석

한창민 · 강유정 · 전재수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기업 유통사는 정산 주기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 $40\sim60$ 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게 되어있음.

그러나 티몬과 위메프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산 기한이나 판매 대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. 최근 발생한 티몬-위메프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과 판매 대금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음. 제2의 티몬-위메프 사태 개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를 상품을 수령 후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,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고자 함(안 제20조제4항 및 제

5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수령 후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- 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(이하 "별도 관리"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	제20조(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
책임) ① ~ ③ (생 략)	책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
	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게
	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
	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수령
	후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영
	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
	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
	<u>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
	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
	정한 금융회사를 통하여 예치
	또는 신탁하여 관리(이하 "별
	도 관리"라 한다)하여야 한다.